

# 노인성질환자 지원조례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지원요건)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권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</u> 및 <u>차상위계층</u>일 것</li> <li>3. ~ 5. (생략)</li> </ol>	<p>제3조(지원요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<u>수급권자</u>일 것</li> <li>3. ~ 5. (제정안과 같음)</li> </ol>

## < 수정안 >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『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호 중 “수급권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및 차상위계층”을 “수급권자”로 한다.